

서울특별시      광진구  
공직자윤리위원회    구성  
및    운영에    관한    조례  
일부개정조례를    다음과  
같이   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인

2015년    10월    30일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3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《신 · 구조문 대비표》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구성)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후단 신설&gt;</u></p> <p>1. 3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</p>	<p>제2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부서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3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.</p>